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가단2349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최정완

변론 종결 2021. 1. 27.

판결 선고 2021.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20. 1. 3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0.1. 31. 접수 D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6.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7,000,000원을이자 연 6.4%(연체이자율 연 9.4%), 변제기 2020. 4. 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채권가액 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 취득 경위

1) 피고는 2019. 11. 8. 소외 회사에게 피고 소유 BMW 330i 자동차(E, 이하 '양도차량'이라 한다)를 39,5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는 한편, 소외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39,500,000원을 변제기 2019.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1)항의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20. 1. 18. 차용금액을 40,000,000원으로 확정하되,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해 주거나 양도 차량을 반환하고 손해비용을 지급하거나 압류가 없는 재산에 차용금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4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20. 1. 19.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점검과 도색 및 광택작업을 거쳐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고, 2020. 1. 3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0. 1. 31. 접수 D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 차량의 매매대금 또는 그 상당의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적정한 가격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 등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갑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무자력)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피고는 2019. 11. 8. 중고차 매매업체인 소외 회사에게 피고 소유인 양도차량을 매매대금 39,500,000원으로 정하여 이전해 주었고, 소외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을 대여하여 약 한달간 변제기를 유예하였으며, 그럼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그 변제에 갈음하여 약 4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자동차나 양도 차량의 거래가액이 당시 중고차시세에 상응하지 않는다거나 염가 내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가 소외 회사와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음을 의심할만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민정

[별지]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2.19>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총 1 면 중 제 1 면	
자동차등록번호		차량관리번호	003-2-00028-0012-1216
차명	Lincoln MKZ 2.0	차종	승용자동차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g
연식(모델연도)	2017	색상	흰색
최초등록일	2017-04-06	세부유형	
최종소유자		세차연월일	2016-08-27
사유분거지 (차고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인(법인)등록번호	